엄 벌 탄 원 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해 관련 업무방해 사건

수신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사건 담당 검사 귀중

피의자 오자연 (일명 “올다르크”)

사건명 2026년 6월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해 관련 업무방해 혐의

사건번호 확인 후 기재: _____

탄원인 성명: _____ (직접 피해자 여부: ☐ 해당 ☐ 비해당)

---

1. 탄원의 취지

본 탄원인은 2026년 6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발생한 출입 방해 사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이 관련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혐의의 성립 여부를 철저히 판단하고, 범죄가 인정될 경우 그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문제 제기나 평화적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이 타인의 정당한 시설 이용과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자동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그 결과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가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건 경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2026년 6월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체육단체 관계자의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제한적인 출입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실제 진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7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9월 14일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유죄나 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탄원인은 위 사실관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공개 보도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 내용과 피해 범위는 수사기록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

첫째, 평화적 의사표현과 타인의 권리 침해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선거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법적 증거보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점거 또는 출입 저지 행위가 타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실제로 방해하였다면, 그 목적과 별개로 법적 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시설 내 입주 단체와 종사자에게 발생한 영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입 저지의 지속 시간, 이용이 제한된 공간, 실제로 차질이 생긴 업무, 경제적·행정적 손실, 출입 조정의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참가자들의 행동이나 이후의 전체 봉쇄 기간을 피의자 한 사람의 책임으로 일괄 귀속시키지 않되, 피의자의 개별 행위에 따른 영향은 구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사적 판단에 의한 강제적 출입 통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적 관심 사안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시설 접근을 임의로 제한할 법적 권한이 있었는지, 업무방해의 고의와 수단, 위력의 존재, 정당화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을 면밀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구체적인 요청 사항

① 현장 영상, 출입 기록, 중재 경위, 관계자 진술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종합해 피의자 개인의 행위와 책임 범위를 판단해 주십시오.

②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책임이 충족되는 경우, 피해 정도와 행위의 지속성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적정한 공소 제기 및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주십시오.

③ 피의자의 주장과 방어권 역시 공정하게 심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를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5. 결어

본 탄원은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제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에 따라 범죄가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하고 공정한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기를 탄원합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